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6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- 중소기업육성자금·음자조건에 대하여 용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던 용자기간을 1년간으로 연장 개정.

첨 부

1.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.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5항중 “1회에 한하여 6개월”을 “1회에 한하여 1년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8조(용자조건) ①자금의 용사는 운전자금에 한하며,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.</p> <p>②~④(생략)</p> <p>⑤용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(생략)</p>	<p>제8조(용자조건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회에 한하여 1년간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⑥(현행과 같음)</p>